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5801
----------	------

제안년월일 : 2006. 12. 21.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9. 7)에
서 2005년 8월 18일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년 10월 19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
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
월 30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
과,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
로 함.

나.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2. 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국한되어 있는 희생자의 심사대상 범위에 수형자(受刑者)를 추가하고, 유족의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유골 발굴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평화공원 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등재나 호적 기재 정정을 쉽게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진상 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내실화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

나.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 위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14조 신설).

라. 정부는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호적 정정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삭제함(안 제11조).

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사.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법률 제 호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일부
개정법률안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주4·3평화인권재단)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호적등재)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u></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2. “犠牲者”라 함은 濟州4·3事件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後遺障痾가 남아있는 者로서 第3條第2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濟州4·3事件의 犠牲者로 결정된 者를 말한다.</p> <p>3. “遺族”이라 함은 犠牲者의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直系尊卑屬을 말한다. 다만,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p>	<p><u>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u></p> <p>第2條(定義) ----- -----.</p> <p>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p> <p>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p>
<p>第3條(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犠牲</p>	<p>第3條(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犠牲</p>

者名譽回復委員會) ① (생략)

②委員會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7. (생략)

<신설>

8. (생략)

③ · ④ (생략)

<신설>

<신설>

第11條(戶籍登載) 濟州4·3事件 당시 戶籍簿 燒失로 戶籍登載가 漏落되거나 戶籍에 기재된 내

者名譽回復委員會) ① (현행과 같음)

②-----
-----.

1.~7. (현행과 같음)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제주4·3평화인권재단)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호적등재)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

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戶籍에 登載하거나 戶籍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신 설>

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